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3. 9. 14(목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자원에 관한 조례안

(복지가족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
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자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05호
- 나. 제 출 자 : 운영회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료급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.
- 나. 계획수립과 지원대상(안 제3조, 제4조).
- 다. 운영 및 운영자 모집(안 제5조, 제6조).
- 라. 지도점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(안 제7조, 제8조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 
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 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  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예관한 조례」 제7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23. 9. 5. ~ 9. 12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금천구 어르신 결식 및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.

2) 계획수립과 지원대상(안 제3조, 제4조).

-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3) 운영 및 운영자 모집(안 제5조, 제6조).

- 운영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

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

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

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장소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종교단체대상

4) 지도점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(안 제7조, 제8조).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급속한 고령화로 결식 및 건강상 우려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노인복지법

[시행 2022. 3. 22.] [법률 제18609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[시행 2023. 11. 17.] [법률 제19646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12. 30.>

2. “수급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10. “차상위계층”이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
## □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 5. 13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56호, 2021. 5. 13., 제정]

제4조(지원내용) ③ 제3조제3호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 3. 18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52호, 2021. 3. 18., 제정]

제7조(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)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건강증진 지원사업

6.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